

WTO 가입 대비한 내국민 대우의 확대 추진

WTO 가입이 임박하면서 중국은 외국인 투자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들을 국제규범에 맞게 손질하는 작업을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기업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WTO 가입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에서 세제와 제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정책 변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외자기업에 적용될 통일세법 추진

우선, 세제측면에서는 우대에서 점진적으로 동등 대우로 방향을 전환할 예정이다. 중국은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내자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기업소득세(법인소득세)를 우대하여 부과하여 왔다. 세계경제의 발전 추세와 WTO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서 볼 때에, 중국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세제상의 차별정책은 공평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의 기업소득세법이 하나로 통합될 개연성이 많다. 다시 말해 내·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을 철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기업소득세법과 관련하여 통합 법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익을 고려하고, 외국인 투자의 안정적인 유치를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축소해나가거나 새로운 통합 세법이 발효되기 전에 신규 투자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통합 세법의 시행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통합과 관련하여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데, 하나는 經濟特區 등과 같이 특정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부여하고 있는 15%의 우대세율을 중국내의 모든 기업에 통일적으로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上海市에서 제기되었고, 실제로 上海市는 100개의 내자기업에 15%의 기업소득세를 실험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지역별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달리 제공

하였던 모든 세금우대를 철폐하여 내자기업에 부과되고 있는 33%의 세율로 통일적으로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양분된 의견의 절충안으로 15~33%의 범위내에서 세율을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절충안이 채택될 경우 경제특구의 우대세율인 15%보다 크게 높지 않은 수준에서 세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현재의 우대세율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세율이 조정될 경우, 연해지역 지방정부들은 외국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개혁의 심화를 통한 기업경영 환경의 개선이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중서부지역은 지금까지 개혁개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기 때문에, 동부 연해지역의 내자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세제상의 우대제도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서부지역 지방정부들이 자원개발권, 대외무역권, 세제혜택 부여권 등의 자율권 확대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데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經濟特區 등을 포함한 연해지역은 다음 몇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로 정부가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둘째로 내·외자기업에 대한 동등 대우를 실시하고, 셋째로 상업, 무역, 금융과 보험분야를 개방하고, 넷째로 규정과 제도를 개선하여 표준화하고, 다섯째로 해외시장과의 긴밀성을 제고시키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내국민 대우의 원칙은 단지 기업소득세의 내·외자기업에 대한 차별적용을 철폐하는데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역별, 업종별 등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받아온데 반해, 내자기업들은 노동자의 취업, 사회복지, 환경보호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제혜택을 받아 왔다. 이러한 기업소득세 이외의 조세에 대해서도 차별을 철폐하여 내·외자기업이 통일적인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자율성 확대 보장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자율성의 확대 보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업 생산과 관련한 경영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와 같은 제약은 외국인 투자형태¹⁾에 따라 각기 다른 근거법을 두고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1) 중국이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형태는 獨資企業, 合資企業, 合作企業 등의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음. 이들 기업은 각기 “外資企業法”, “中外合資經營企業法”, “中外合作經營企業法”의 적용을 받음.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규정 개정이 예상되는 조항으로는

첫째,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체적으로 외환 과부족을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外資企業法 제18조, 中外合作企業法 제20조)을 들 수 있다. 이 조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중국 내수시장의 진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것이다. 독자기업이나 합작기업의 경우 동 조항의 적용을 받아 배당금과 외국인 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대금 등의 필요 외화자금에 대해서는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1996년 12월 경상계정 부문에 대한 외환의 자유 태환을 실시함으로써 동 조항이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번에 폐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원·부자재 등 중국 제품의 우선 구매 요구 내용(中外合資企業法 제9조, 外資기업법 제15조)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합작기업과 독자기업에 대해 중국산 원·부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등 기업 경영 자율권을 제한하였다. 이는 공평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조항으로 그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의 불만을 사왔으며, 이번에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강제적인 수출의무 이행(外資기업법 제3조)을 완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자기업은 100% 외국인 투자자금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중국에서의 경영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부담되었던 것이 바로 동 조항에서 요구하는 전량 수출 또는 대부분 수출 의무(생산제품의 70% 이상)의 이행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독자기업도 내자기업과 동등하게 기업 자체적인 판단하에 내수든 수출이든 할 수 있도록 하되, 동 조항의 문안을 ‘수출장려’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기업의 생산과 경영계획의 관련 기관알 보고(중외합작기업법 제9조, 外資기업법 제11조)의 이행에 대한 내용이다. 동 조항은 과거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정부가 생산과 분배를 오로지 하던 구습의 잔존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1992년 10월 공산당 제14기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다음해 3월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헌법에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함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금년 10월에 개최된 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제10차 5개년(2001~2005) 개발계획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미 초보적인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마련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진력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로 볼 때 동 조항의 폐지를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장진입 제한 점진적 완화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장진입이 제한되었던 서비스 분야가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확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에 발표된 10차 5개년 개발계획에서도 서비스 분야를 크게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기존의 체인점, 전자상거래 등 유통과 대중교통 등의 분야를 개선함과 동시에 정보, 금융, 회계, 컨설팅, 법률자문 등 분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크게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관광, 오락, 교육, 건강, 위생 등과 관련된 산업도 발전시킬 예정으로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들 분야에 대한 진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이점이 중국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확대를 시사하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진입제한의 완화는 첫째, 금융부문에 대한 지역제한의 취소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외국계 금융기관은 중국 어디서나 지점 설치가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위안화 업무도 취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보험부문도 현재의 上海, 廣州에서 深圳, 重慶, 大連, 天津市로 개방지역의 확대가 예상된다. 현재 진출허가를 받은 외국계 보험회사는 4개사이다. 둘째, 유통업(소매)의 개방지역도 전국 각 지역의 省都和 계획단열도시(대련 등의 省都에 버금가는 도시) 및 經濟特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北京, 天津, 上海, 重慶市에서는 도매업을 시험적으로 개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무역회사, 회계사무소, 법률자문, 항공회사, 통신, 관광 등의 분야도 점차 확대 개방될 전망이다.

우리기업의 중국진출 방안 적극적 검토 필요

한편, 우리기업도 중국의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발맞추어 기업 스스로 그 대비책과 진출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해외시장의 확보차원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진출한 기업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재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진출기업의 경우 상관습 등 중국의 경제환경에 비교적 익숙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을 개척하는데 신규 투자진출하는 기업보다 효과적으로 중국의 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출기업의 이익금으로 당해 기업의 증가 또는 중국내에 신설법인을 설립할 경우 세제상의 혜택²⁾을 받을 수

2)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外商投資企業與外國企業所得稅法”) 제10조 및 동법 실시세칙(實施細則) 제81조에 의하면, 이익금의 재투자시에 다음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납부한 재투자분 소득세의 40%를 환급받을 수 있음. 재투자자 수출기업이나 첨단기술

있는 이점도 있다.

둘째, 중국의 중서부개발 추진에 맞추어 이 지역의 투자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서부지역 개발³⁾을 위해 중국 정부는 비록 한시적일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상의 우대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을 불문하고 장려산업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세제 우대기간(이익 발생연도부터 2년 면제, 3~5년 50% 감면)이 만료 후 3년 동안 15%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서부 지역의 省都는 유통업(특히 소매업)의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초기의 사업투자는 소규모로 추진하되 최종 완성품을 기준으로 수직 계열이 가능한 수개기업이 특정지역에 동반진출을 고려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를 목적으로 한 제조업 분야의 중국 진출시 중국의 상행위 등 상관습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의 사업투자는 소규모로 추진하되 최종 완성품을 기준으로 수직계열이 가능한 수개기업이 특정지역에 동반진출하여 협상력의 제고는 물론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특히 중서부 지역으로 투자하는 경우 각 지역의 행정중심 도시인 省都를 우선 투자대상지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 행정중심 도시는 상대적으로 이미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충된 단계인 데다가 이들 지역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은 물론 그 자체로 충분한 시장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이 개방화가 늦은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金周永】

기업의 증자 또는 신규설립에 사용될 경우와 海南經濟特區에 소재한 기업이 이익금을 海南經濟特區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농업개발을 위한 기업의 설립에 투자할 경우는 기업 납부 소득세액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음.

3) 중서부지역이라 함은 山西, 吉林, 黑龍江, 安徽, 江西, 河南, 湖北, 湖南의 8개 중부지역과 四川, 貴州, 云南, 陝西, 甘肅, 青海, 內蒙古, 西藏, 寧夏, 重慶, 新疆의 11개 서부지역 등 총 19개 省·市·自治區임.

4) 장려산업 분야를 개괄하면, 농업, 임업과 생태환경, 정보통신, 관광, 광산자원 개발, 석유와 천연가스, 수리시설·철도와 도로·도시기반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이 있음.